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안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업소단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7조제1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건은 지난 99년 8월 17일 제정된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 제7조(구역의 관리·운영) 제1항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어 법적근거에 문제점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행정자치부, 시행일 2003.2.27]

第25條 (青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 등)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善導 및 阻速方法 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主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

[1999. 8. 17 조례 제292호]

제7조(구역의 관리·운영) ①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개정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3항에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현행 조례 제7조(구역의 관리·운영)제1항에는 업소단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고, 또한 금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단속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보완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금회에 보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타당성이 있음.